

문서번호	경영기획팀-859
보고일자	2018.09.20
공개여부	공개
보존연한	

사원	경영기획팀장	경영본부장	결 재
심지현	주리정	09/20 김동진	
			협 조

- 부당한 업무지시 유형 및 판단 기준 안내 -

## 2018년 청렴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(제1차)



**한국도자재단**  
KOREA CERAMIC FOUNDATION

## - 부당한 업무지시 유형 및 판단 기준 안내 -

# 2018년 청렴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(제1차)

### □ 개요

- 목 적 : 청렴간담회 개최를 통한 내부청렴도 개선 및 간접부패 이미지 개선, 부당업무지시 등 부패행위 개선
- 대 상 : 도자세상 근무자(유통마케팅팀)
- 일 시 : 2018.9.14. 10:30~12:00
- 장 소 : 유통마케팅팀 회의실(6층), 세계생활도서관

### □ 간담회 결과

- 참 석 : 17명 ※ 정규직 : 12명(1명 불참:병가)
- 내 용 : 부당업무지시 전반
  -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대상 공유 및 의견수렴(부당업무지시 관련)

개정 전	개정 후
(신설)	<p><b>제4조의2(복종 의무 상충 소지의 제거) ①</b>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「인사관리규정 징계양정규정 복종의무 위반」와의 상충 소지를 제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5를 따른다.</p>
<p><b>제29조(준수 여부 점검) ①</b>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를 매년 4회 이상, 외부활동·회의 운영 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9조(준수 여부 점검) ①</b>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발생 여부를 포함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준수여부를 매년 4회 이상, 외부활동·회의 운영 실태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</p>

- 부당업무지시 유형 및 판단 참고자료 ⇨ 유형 및 판단기준 강령에 반영 요청

※ 제4조2 조항 추가(별표5 : 붙임 참조)

② 제1항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은 별표5를 따른다.

- 부당업무지시의 유형과 판단 기준 안내 : 징계양정규정 복종의무 상충 제거 안내
- 부당업무지시 상담 등 창구 안내 :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(익명 가능 안내) 등

○ 간담회 사진



□ 기 타(향후계획)

- 부당업무지시 발생여부 안내 및 환류(1:1 면담 추진) : 10월 예정